

영등포구의회
제18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4. 4.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85호로 2014년 4월 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발의되어 2014년 4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법」(‘14.1.1 일부개정)이 개정되어 우리구 관련 조례 중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등록면허세 세율인상

- 등록분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 표준세율과 동일 적용 (안 제5조)
 - 최저세액 변경 : 3,000원 ➔ 6,000원
- 면허분 : 50% 인상 (안 제7조)

현 행		➔	개 정	
구 분	세 율		구 분	세 율
제1종	45,000원		제1종	67,500원
제2종	36,0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27,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18,0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2,000원		제5종	18,000원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28조 및 제3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이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에 “소유권의 보존등기 등”의 최저세액을 3,000원에서 6,000원으로, “그 밖의 등기”를 건당 3,0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으며,
- 안 제7조에 각종 인허가 등의 등록면허세 세율을 종별로 50%씩 각각 인상하였음.

○ 이 개정 조례안은 1992년 이후 22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한 「지방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면허세의 최저세액과 세율을 50%씩 각각 조정 및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개정에 따라 구 세입이 약
11억원¹⁾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 등록면허세 등록분 : 1억원, 등록면허세 면허분 : 10억원 (※ 해당부서 추계)

참 고 자 료

1 지방세법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1.3.29, 2011.12.2,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세액이 6천원 미만일 때에는 6천원으로 한다. 이하 나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같다)

마.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

제34조(세율) 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

구분	인구 50만 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 1종	67,500원	45,000원	27,000원
제 2종	54,000원	34,000원	18,000원
제 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제 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제 5종	18,000원	7,500원	4,500원